의안번호	제 492 호			
의 결	2013년 월 일			
연 월 일	(제 321 회)			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3년 6월 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492 제출연월일: 2013년 6월 3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○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반영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개선·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심의사항 (안 제6조)
 -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기술심의, 대형공사·특정공사 입찰방법심의, 일괄·대안 입찰공사 입찰안내서 및 설계심의 등 세부사항 명시
 - 도, 시·군 시행 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
- 소위원회·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 - 일괄·대안 입찰공사 설계심의를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사항
-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(안 제13조)
 - 심의위원으로서 윤리와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비위·부패 등 결격사유 명시
- 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 ※ 현행조례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설기술관리법」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 - 1. 건설 업무와 관련된 도 및 시·군 5급 이상의 공무원
 - 2. 건설 관련 단체 임원 및 연구기관의 임원
 - 3.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제3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 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궐위촉하지 아니한다.

- 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(위원회 회의소집) ① 회의의 소집은 제10조에 따른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-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하여 통지할 수 있다.
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6조(위원회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사로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
 - 2. 영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사항
- 제7조(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영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(이하 "분과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 -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2 범위에서일시적으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. 다만, 분과위원의 과반수는 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·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.
 -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,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.
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,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한다.
-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5조에 따른다.
-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8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·분과위원회·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.
 -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,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.
- 제9조(심의요청)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기관에서는 건설기술심의 요청서에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개최 및 심의 결과 통보)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심의 요청 결과를 요청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의견 청취 등)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- 제12조(심의사항의 사후 관리)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기관은 그 조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3조(위원의 해촉) 위원은 속임수에 의한 방법 또는 영 제23조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.
- 제14조(수당 및 여비 등) ①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, 수당 및 여비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제15조(심의수수료)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되,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 내용 및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1. 충청북도 본청 및 소방본부
 - 2. 충청북도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·출장소
 - 3. 충북개발공사
 - ② 수수료는 위원회 심의 후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고, 그 밖에 수수료의 부과·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 조례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(일부개정) 2001-06-15 조례 제 02659호 (일부개정) 2006-12-22 조례 제 2965호 (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 (일부개정) 2007-05-11 조례 제 3005호 (일부개정) 2008-07-01 조례 제 3095호 (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) (일부개정) 2010-05-14 조례 제 3256호 (일부개정) 2010-08-11 조례 제 327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설기술관리법」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균형건설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정수의 1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.
 - 1.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및 시·군 5급 이상 공무원
 - 2. 건설관계 단체의 임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
 - 3.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
 - 4.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 - 5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「건축사법」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
 - 6. 건설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
 - ④ 도지사는 제10조제3호에 의한 설계적격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.

- 제3조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4조(임기)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제5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.
 - ② 간사는 도본청 건설기술심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업무담당사무관이되고, 서기는 기술심의 담당자로 한다.
- 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, 일시,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하게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(별지 제3호서식)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(별지 제4호서식)을 비치하여야 한다.
- 제8조(비밀유지)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 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9조 (삭제 2001. 6. 15)

제10조 삭제 <2010. 5. 14>

- 제11조(심의요청)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 서와 사업요약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
 - 2. 사전심사 자료
 - 3.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(세부설계서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)

- 4.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
- 5. 공법·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검토서
- 6.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
- 7. 수리계산서 및 필요시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
- 8.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
-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변경 설계서
- 2. 설계변경 내역서
- 3. 기타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
-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 다만,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건설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. 다만, 심의위원회가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- 제11조의2(사전심의) ① 위원장이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한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있다.
 - 1.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: 5일 이내
 - 2. 시설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: 7일 이내
 - ②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(별지 제5호서식)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1조의3(현장조사 등) ① 위원장은 대상공사의 건설기술심의중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(신설 98. 1. 16)
 - ② 위원의 현장조사시에는 심의 요청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12조(의안설명)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

-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결과처리) ① 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결과중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3조의2(심의의결)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, 조건부채택,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.
 - 1. "원안채택"이라 함은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
 - 2. "조건부채택"이라 함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
 - 3. "재심의"라 함은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
- 제14조(소위원회 등)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다.
 - ②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.
 -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 한다.
 -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.
 -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심의한다.
 -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 - 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.
 - ⑧ 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제10조제3호에 의한 설계 적격심의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15조(수당 및 여비 등) ①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전문개정 2007. 5. 11]
 - ② 제10조제3호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·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

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, 수당 및 여비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 [전문신설 2007. 5. 11]

- 제15조의2(수수료) ①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의 기술심 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07. 5. 11]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위원회의 심의전까지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,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.
 - ③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u>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기준(제15</u>조의2 관련)

구 분	수수료 산출기준 (1건당)
1.「기술관리법시행령」제19조제2항제1호· 같은 조 같은 항 제1의2호의 심의 사항	위원 수×(안건심사수당+회의출석수당+여비)
2.「기술관리법시행령」제19조제2항제1의4 호의 심의사항	위원 수×(회의출석수당+여비)
3.「기술관리법시행령」제19조 제2항제1의3 호의 심의사항	위원 수×(안건심사수당×응찰업체수) + 위원수 × (여비+회의출석수당) × 회의참석횟수
4. 그 밖의 심의사항	위원 수×(안건심사수당+회의출석수당+여비)

※ 비 고

- 1. 안건심사수당, 회의출석수당 및 여비 :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」에서 정하는 금액
- 2. 응찰업체 수는 일괄입찰·대안입찰 공사의 입찰에 응한 업체의 수를 말한다.

건설기술심의신청서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공사 설계의 심의를 신청합니다.

- 1. 공 사 명 :
- 2. 공사개요 :
- 3. 공사위치 :
- 4. 소요공사비:
- 5. 착공예정연월일:

준공예정연월일 :

6. 설계상특이사항: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

건 설 기 술 변 경 심 의 신 청 서

충청북	도지방건]설기술심의]위원회조려	제11조제2항의	규정에	의하여	다음과	같이
주요시설	공사의	설계변경	심의를 신	청합니다.				

1. 공 사 명 :				
2. 공사개요 :				
3. 공사위치 :				
4. 소요공사비 :				
5. 당초설계금액 :				
변경설계금액 :	(증감)			
6. 착공년월일 :				
7. 준공예정년월일 :				
8. 계약업체명 :				
9. 변경사항 :				
10. 변경사유 :		년	월	일
		긴	包	뒫
		신청인		(인)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

(별지 제3호 서식)

회 의 록

1. 안 건:

2. 회의일시 :

3. 장 소:

4. 참 석 자 :

일 런 번 호	위 원 성 명	서 명

5. 회의결과 : 별첨

(별지 제4호 서식)

건 설 기 술 심 의 대 장

공 사 명		의안번호			신청자		
접수일자		사전심사 기 간		회의일시		완결 일자	
공사기간		총공사비		금 회 공 사 비			
심사위원				의 견 서 제출위원			
심사위원				회 의 불참위원			
심사결과							
특기사항							
비고							

사 전 심 의 검 토 의 견 서

ㅇ 심의안건명 :

ㅇ 의 견:

위와 같이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심의위원 ①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

관계법령 발췌

□ 건설기술관리법

제5조(건설기술심의위원회) ① 건설기술의 진흥·개발·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"중앙위원회"라 한다)를 두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"지방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"특별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2.1.17, 2013.3.23>

② 중앙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, 지방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, 그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2.1.17, 2013.3.23>

[전문개정 2009.12.29]

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

- 제19조(지방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(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)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1.9.15, 2013.2.20, 2013.3.23>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. 다만,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.
 - 가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
 - 나.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·인가·승인 등(이하 "허가등"이라 한다)을 한 행정기관(국가기관은 제외한다)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
 - 다.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

- 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이 호에서 "영"이라 한다)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·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
 - 나.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
 - 다.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·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
 - 라.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
 - 마.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
 - 바.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
 - 사.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
 - 아.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
- 3.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
- 4.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
- 5. 해당 지방위원회가 속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이 호에서 "시·도"라 한다)의 시·도지사 및 그 시·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·군·자치구의 시장· 군수·구청장이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5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,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, 특별위원회,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지방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·라목·마목·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분과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 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13, 2013.3.23>
- ⑥ 분과위원의 과반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·군·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. <개정 2012.7.13>

-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, 간사,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·제4항·제6항 및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0조제6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"은 "지방자치단체의 장"으로 보고, 제17조제3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"은 "지방자치단체의 장"으로, "제8조제5호나목·라목·마목·사목 및 아목"은 "제19조제2호나목·라목·마목·사목 및 아목"으로, "중앙위원회"는 "지방위원회"로 본다. <개정 2011.12.13, 2013.2.20, 2013.3.23>
- ⑧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·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 <신설 2013.2.20, 2013.3.23>
-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2.20> [전문개정 2010.12.13]
- 제10조(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(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"분과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2.20>
 - 1. 기준정비분과위원회: 제8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
 - 2. 설계심의분과위원회: 제8조제5호나목·라목·마목·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
 -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1.12.13>
 - ③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 -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할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.
 -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설계심의분과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 구성 및 심의·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13.2.20>
 -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,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2.20, 2013.3.23>
 -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13.2.20, 2013.3.23> [전문개정 2010.12.13], [제목개정 2013.2.20]

- 제12조(소위원회) ① 중앙위원회(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)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②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(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)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(분과위원회의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을 말한다.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)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 - ③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.
 -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.
 -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
 -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 -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0.12.13]

- 제23조(위원의 해촉 등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2.7.13>
 -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 - 2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
 - 3.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
 - 4.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(非違事實)이 있는 경우
 - 5.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 - 6.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
 - 7.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 - 8.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, 학력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(前歷)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
 - 9.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[전문개정 2010.12.13]

[별표 2] <개정 2013.3.23>

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・운영 기준(제10조제5항 관련)

1.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

중앙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이 표에서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하고, 그 명단을 공개한다.

- 가.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·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
-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·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
- 다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(선임연구위원)급 이상의 사람,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「고등 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·부교수·조교수

2.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평가

- 가.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나.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.

3.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 · 운영

- 가.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(이하 이 표에서 "소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은 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. 다만,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마목에 따른 협의를 거쳐 위원의 선정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.
- 나.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, 소위원별 평가점수, 사유서 및 세부 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.
- 다.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.
- 라.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·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.
- 마.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

제3조(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8조제5호다목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"중앙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[전문개정 2010.12.20]

[제5조에서 이동,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<2010.12.20>]

제4조(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) 영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"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

- 1.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
- 2. 「문화재보호법」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·복원·정비 공사
- 3.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
- 4.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
- 5. 「건축법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
- 6.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
- 7. 준설(浚渫) 공사

[전문개정 2010.12.20]

[제5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<2010.12.20>]

[참조조항]

□ 건설기술관리법

- 제21조(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)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(公募)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및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·소방 등의 설비공사(이하 "설비공사"라 한다)에 대한 감리 자격을 전부 갖춘 감리전문회사[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(共 同受給體)를 구성한 감리전문회사를 포함한다]를 우대할 수 있다.
 - ④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배상(賠償)하여야 하고,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이나 공제 (共濟)에 가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
 -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·종류·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